

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작성·조정)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「문화유산법」) 제13조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「자연유산법」) 제10조 및 「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24조, 「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2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등에 따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작성·조정) 및 지형도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11. 24.

인천광역시장

1. 고시명 :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작성·조정)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
2. 고시내용

가. 대상유산 : 인천광역시 소재 시지정유산 37개소(허용기준 30건)

연번	고시	종목	유산명	구·군	상세주소
1	1	유형문화유산	강화 보문사 석실	강화군	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-1 외
2		자연유산	강화 보문사 향나무		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828번길 44
3		민속문화유산	강화 보문사 맷돌		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828번길 44
4	2	유형문화유산	강화 삼암돈대		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223-4 외
5	3	유형문화유산	강화 적석사 사적비		강화군 내가면 연춘길 181
6		기념물	강화 삼거리 고인돌군		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산120 외
7		기념물	강화 고천리 고인돌군		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115-1 외
8	4	기념물	이규보 묘		강화군 길상면 까치골길 72-17
9	5	기념물	강화 봉천대		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463번길 30-6
10	6	기념물	강화 계룡돈대		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282
11	7	기념물	강화 참성단 천재궁 터		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64-2 외
12	8	기념물	허유전 묘		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97
13	9	기념물	강화 인산리 석실분		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71 외
14	10	기념물	강화 건평돈대		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산39

연번	고시	종목	유산명	구·군	상세주소
15	11	문화유산자료	강화 원충사 터		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산177
16	12	문화유산자료	강화 망월돈대		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2107 외
17	13	문화유산자료	강화 무태돈대		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51-2 외
18	14	기념물	삼목도 선사 유적	중구	중구 운서동 1830-1 외
19	15	문화유산자료	남북동 조병수 가옥		중구 용유로 380번길 21
20	16	유형문화유산	용궁사		중구 운남로 199-1 외
21		자연유산	용궁사 느티나무		중구 운남로 199-1
22	17	유형문화유산	인천도호부 관아	미추홀구	미추홀구 매소홀로 553
23		유형문화유산	인천향교		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외
24	18	기념물	문학산성		미추홀구 문학동 164-69 외
25	19	기념물	이윤생·부인 강씨 정려		미추홀구 독배로 404번길 34
26	20	유형문화유산	논현포대	남동구	남동구 호구포로 203-31
27	21	기념물	김재로 묘		남동구 운연동 산64-13
28	22	기념물	월성박씨 종중 묘역		남동구 서창동 산29-17
29	23	문화유산자료	장도포대 터		남동구 논현동 111-13 외
30	24	기념물	이찰·이율 형제 정려	계양구	계양구 갈현동 산73-6
31	25	기념물	이선봉 묘역		계양구 등그재산길 35
32	26	유형문화유산	심즁 신도비	서구	서구 경명대로 725-26
33	27	기념물	류사눌 묘		서구 경서동 산200-1
34	28	기념물	대곡동 고인돌군		서구 대곡로 356
35		기념물	평산신씨 종중 묘역		서구 대곡로 368번길 11
36	29	기념물	반남박씨 대종중 묘역		서구 대곡동 213-9
37	30	기념물	김안정 묘 및 묘비		서구 원당동 810-15

나. 관련근거

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제35조제1항제2호
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의2제2항
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의2
-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4항
-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
-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
- 「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24조
- 「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22조

다. 기준의 적용

- 본 허용기준은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2제2항제1호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4항 및 제5항, 「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24조, 「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,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시지정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.

-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 및 제7항과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지정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, 기초자치단체(군·구)에서 자체 처리함.

라.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: [붙임]

- 인천광역시 홈페이지(<http://www.incheon.go.kr>) : 인천소식→고시공고→허용기준고시 참조

3. 기준시행일 : 시보 고시일

4. 문의처

연번	시·구·군	부서명	주 소	연락처
1	인천시	문화유산과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(구월동), 신관 9층	032-440-4032
2	강화군	국가유산과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, 지킴이센터 3층	032-930-3893
3	중구	문화관광과	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, 제1청사 동별관 1층	032-760-6474
4	미추홀구	문화예술과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(송의동), 본관1청사 3층	032-880-7973
5	남동구	문화관광과	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(만수동), 본관 6층	032-453-2133
6	계양구	문화체육관광과	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, 4층	032-450-5824
7	서구	문화관광체육과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, 서구청 제2청사), 13층	032-560-593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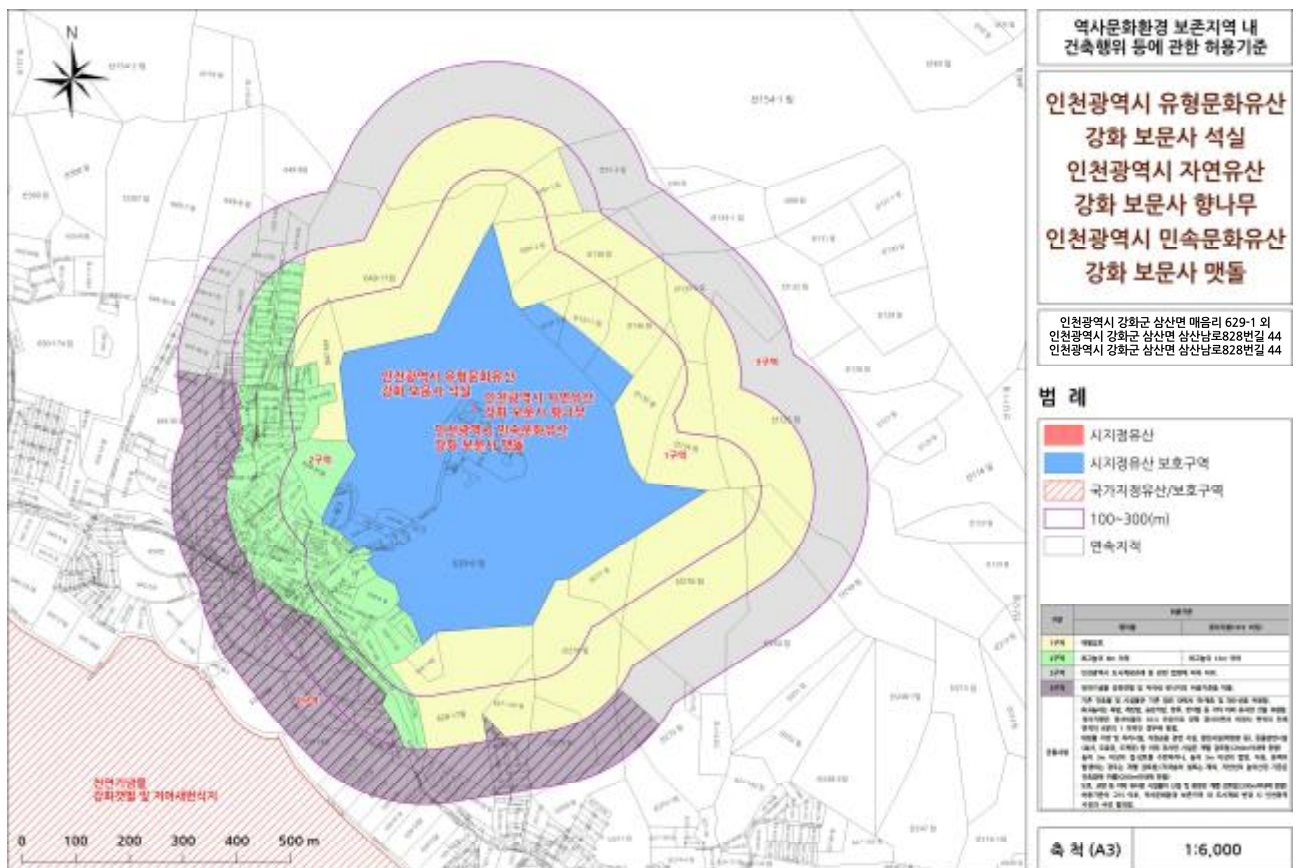
붙임 1.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30건) 1부.

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30건)

◇ 강화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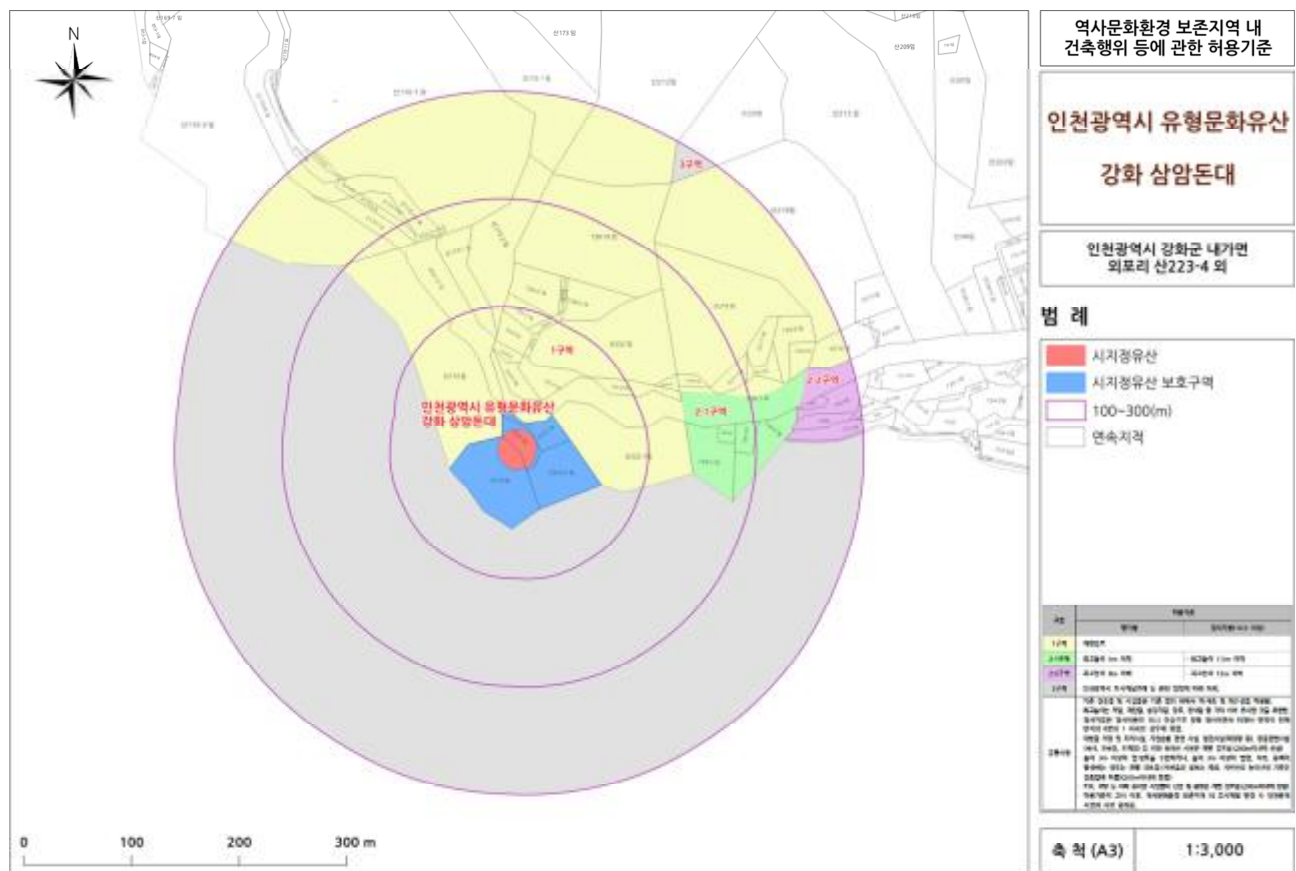
1) 유형문화유산 강화 보문사 석실, 자연유산 강화 보문사 향나무, 민속문화유산 강화 보문사 맷돌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◦ 개별검토	
2구역	◦ 최고높이 8m 이하	◦ 최고높이 12m 이하
3구역	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	
4구역	◦ 천연기념물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의 허용기준을 따름.	
공통 사항	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 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 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	



2) 유형문화유산 강화 삼암돈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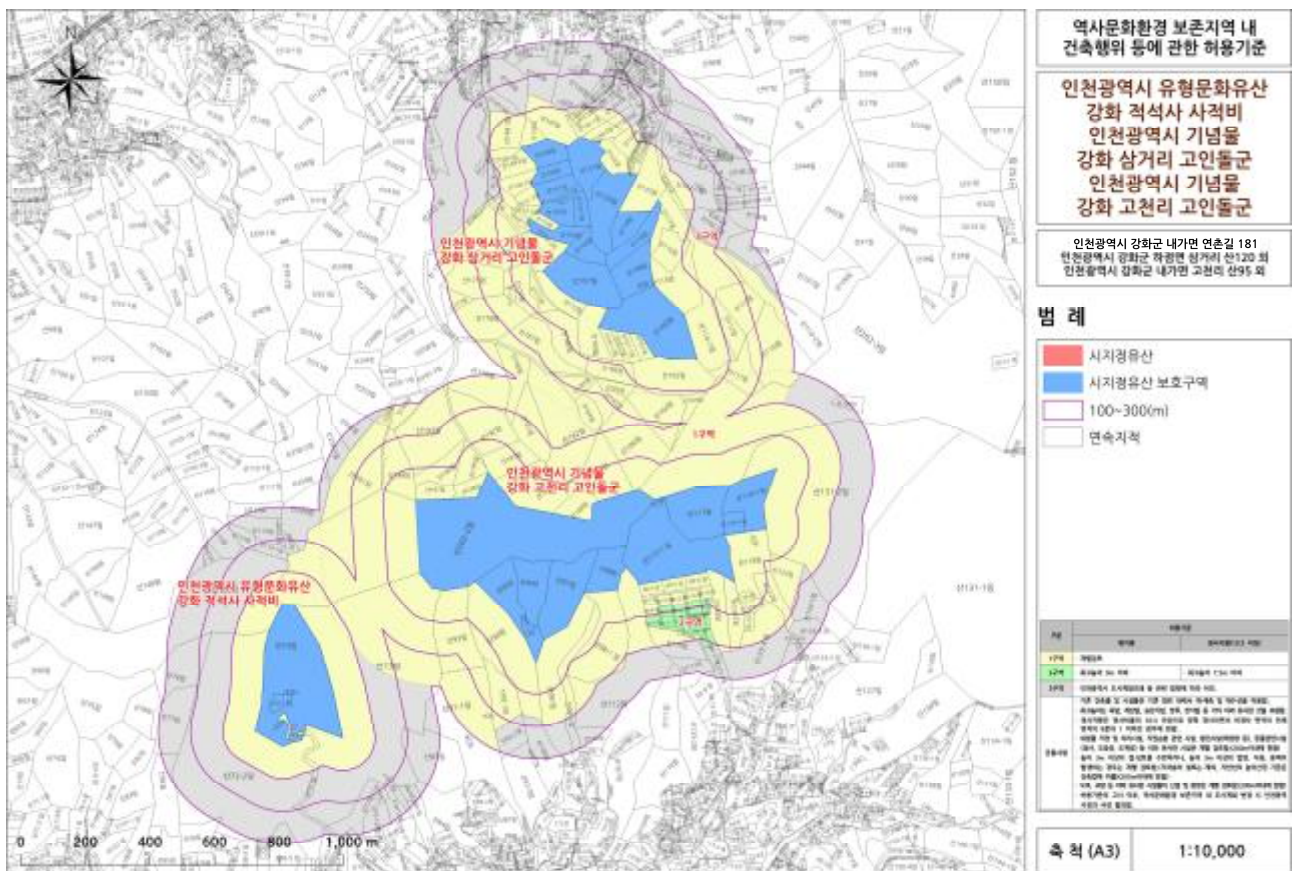
구분		허용기준	
	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	◦ 개별검토	
2구역	2-1	◦ 최고높이 5m 이하	◦ 최고높이 7.5m 이하
	2-2	◦ 최고높이 8m 이하	◦ 최고높이 12m 이하
3구역		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	
공통 사항		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 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 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	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3) 유형문화유산 강화 적석사 사적비, 기념물 강화 삼거리 고인돌군, 기념물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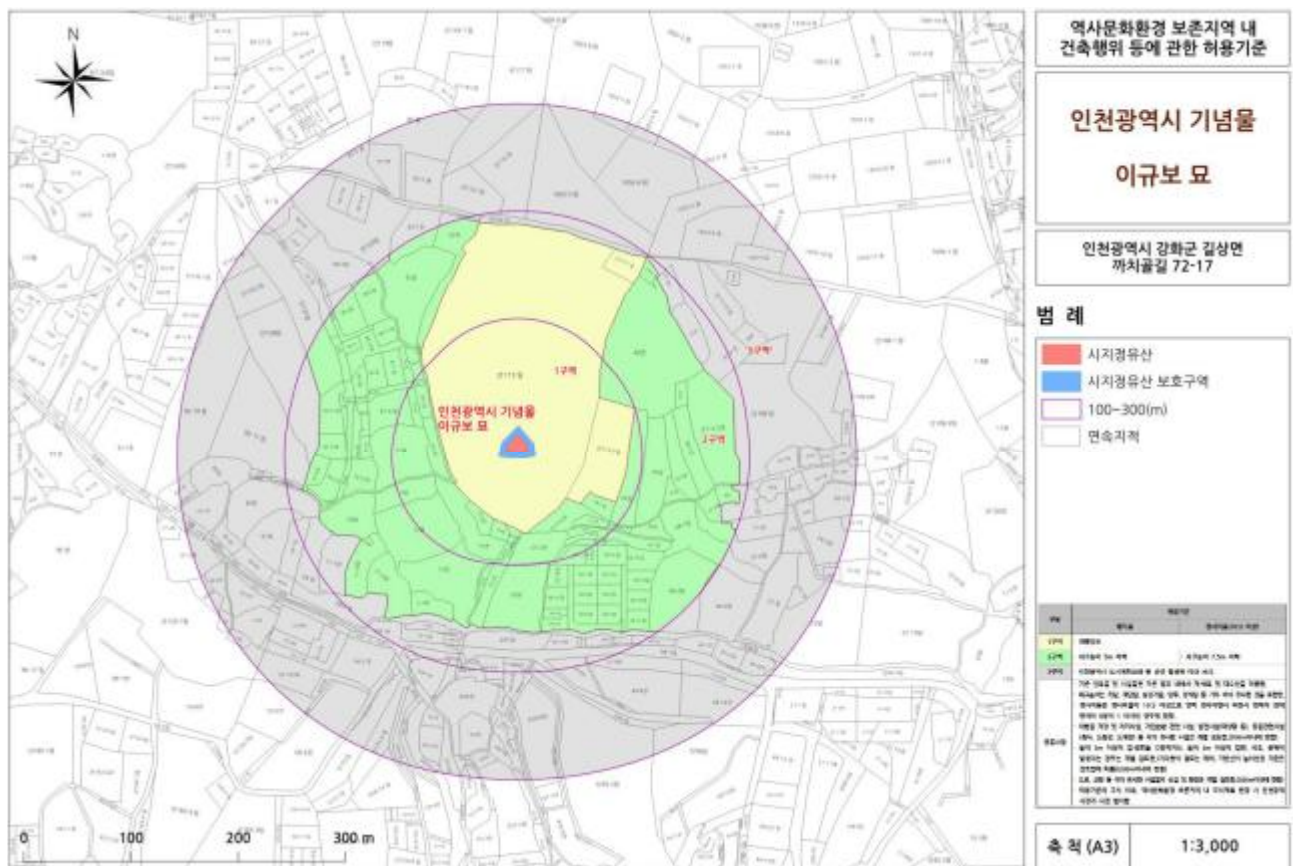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◦ 개별검토	
2구역	◦ 최고높이 5m 이하	◦ 최고높이 7.5m 이하
3구역	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	
공동 사항	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 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 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	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문화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4) 기념물 이규보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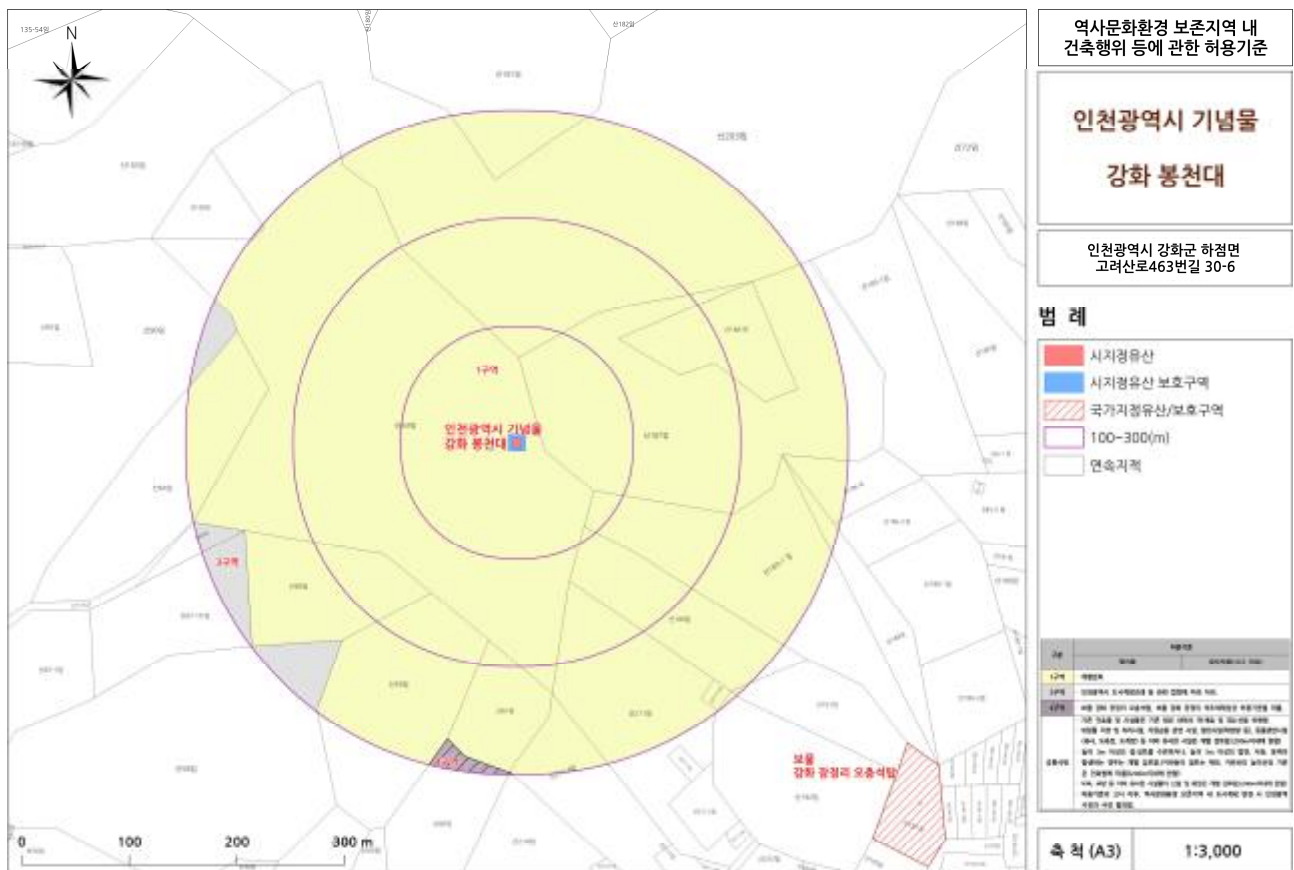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◦ 개별검토	
2구역	◦ 최고높이 5m 이하	◦ 최고높이 7.5m 이하
3구역	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	
공동 사항	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 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 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	



본 도면은 실체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익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게 바라며, 꼭꼭 의 타당도의 사를을 금합니다.

5) 기념물 강화 봉천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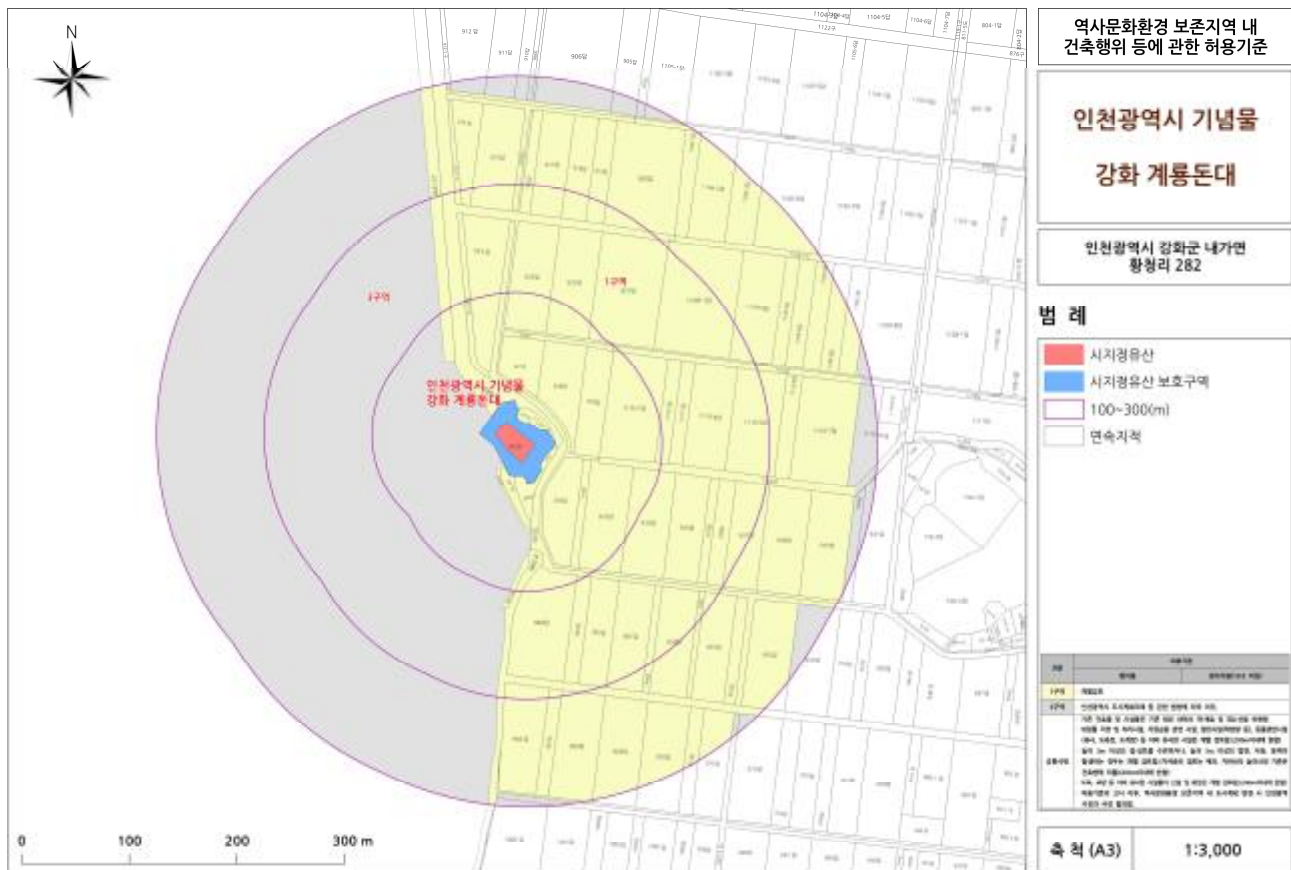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◦ 개별검토	
3구역	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	
4구역	◦ 보물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, 보물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허용기준을 따름.	
공통사항	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 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 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	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총문서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축척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6) 기념물 강화 계룡돈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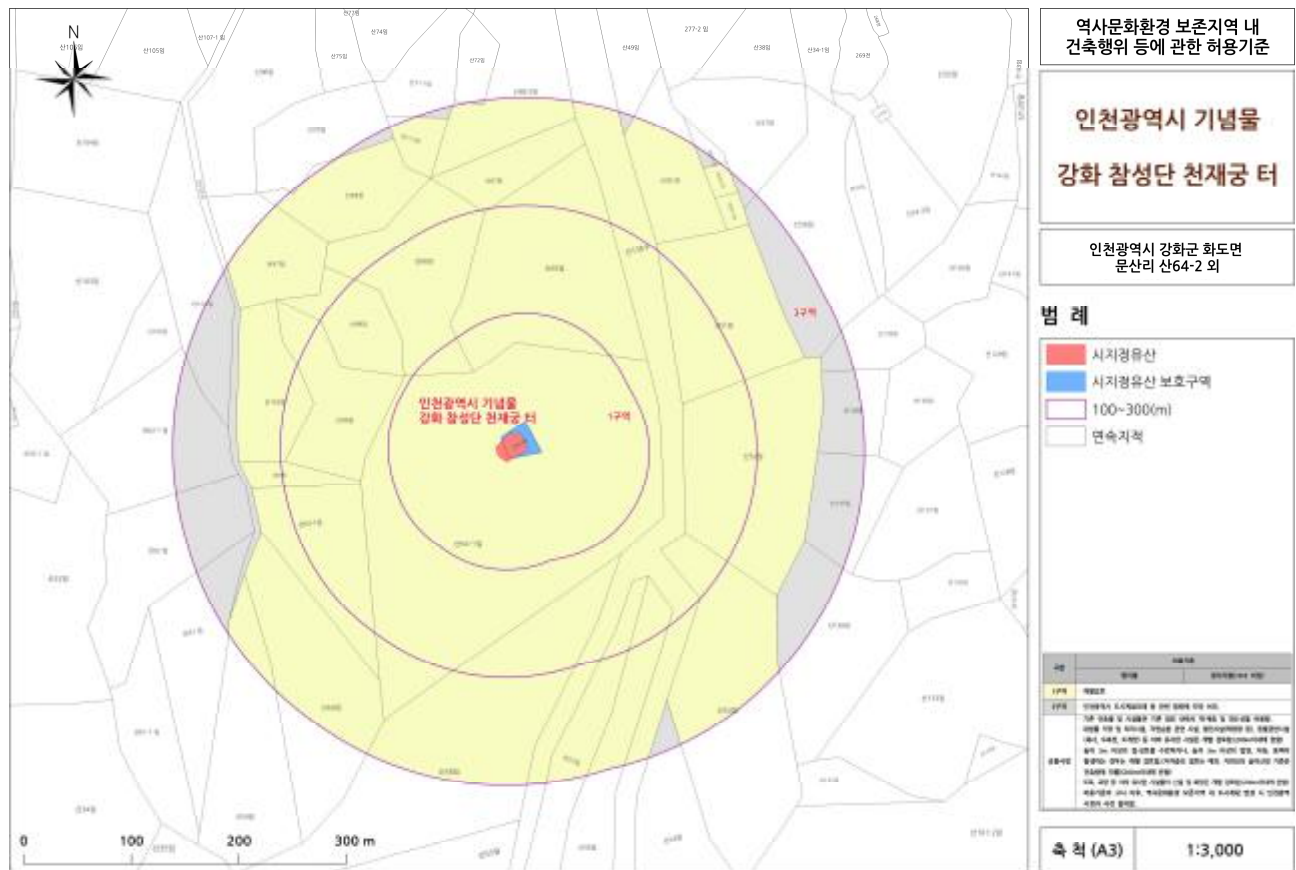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◦ 개별검토	
3구역	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	
공통사항	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 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 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	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7) 기념물 강화 참성단 천재궁 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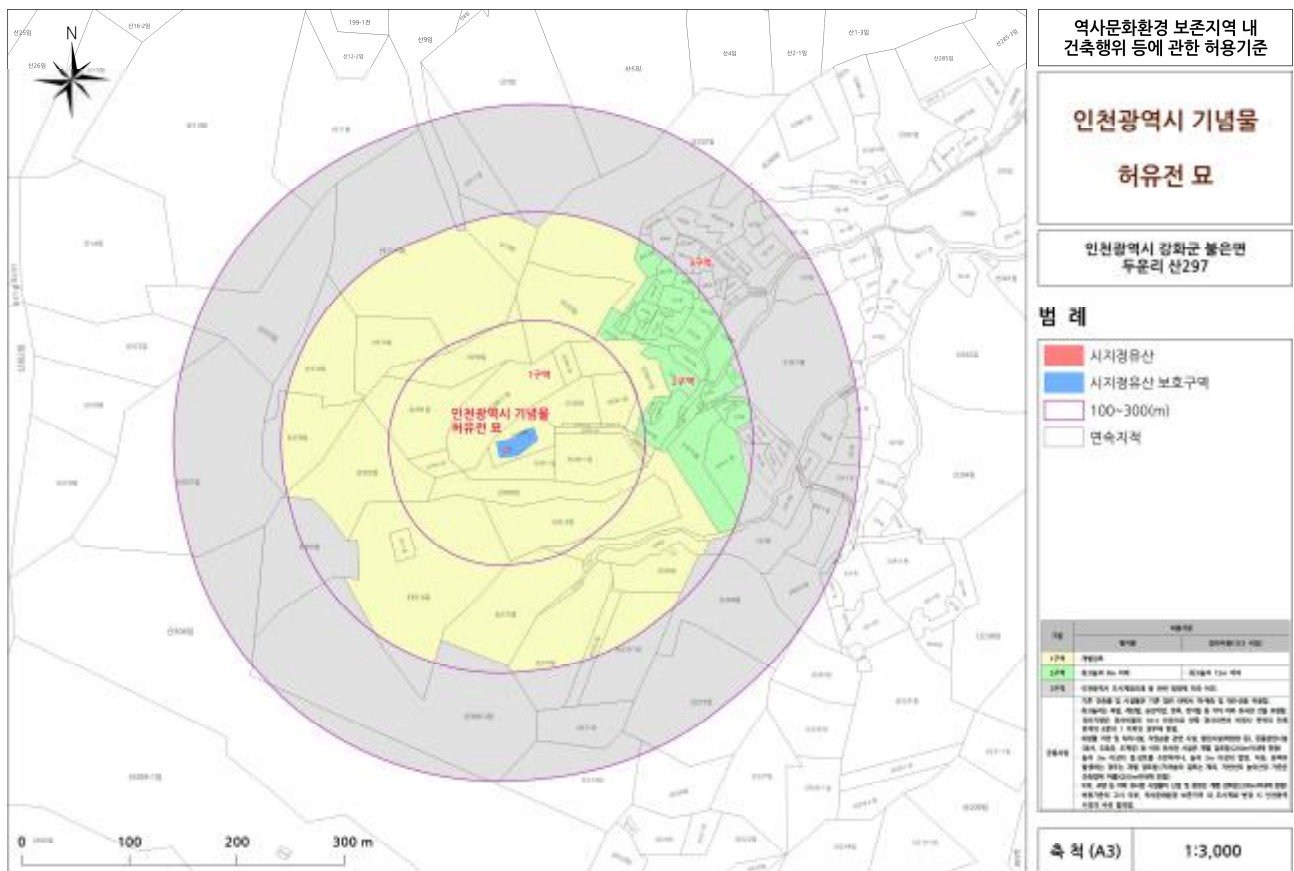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◦ 개별검토	
3구역	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	
공동 사항	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 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 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	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8) 기념물 허유전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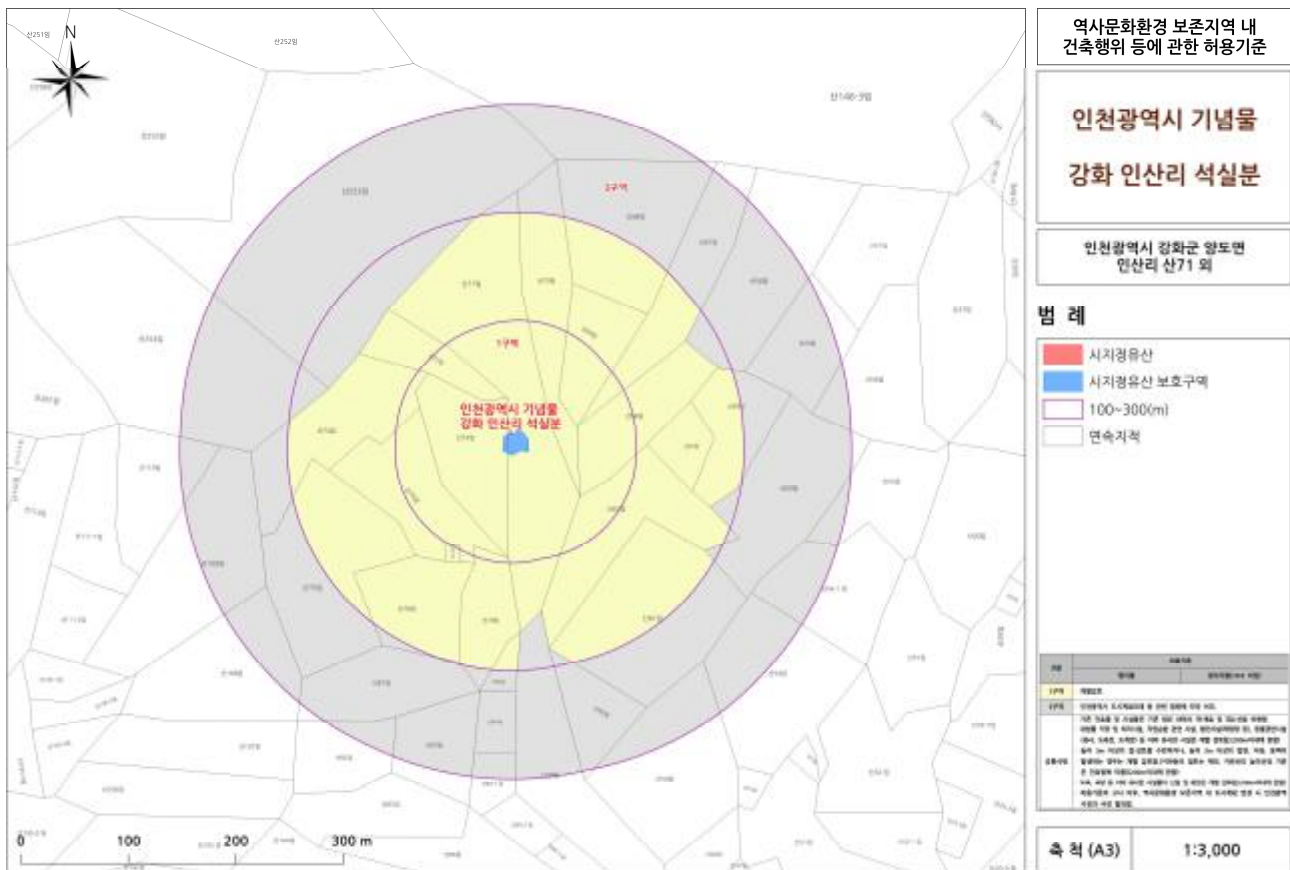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◦ 개별검토	
2구역	◦ 최고높이 8m 이하	◦ 최고높이 12m 이하
3구역	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	
공동 사항	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 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 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	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사용등의 사용을 금합니다.

9) 기념물 강화 인산리 석실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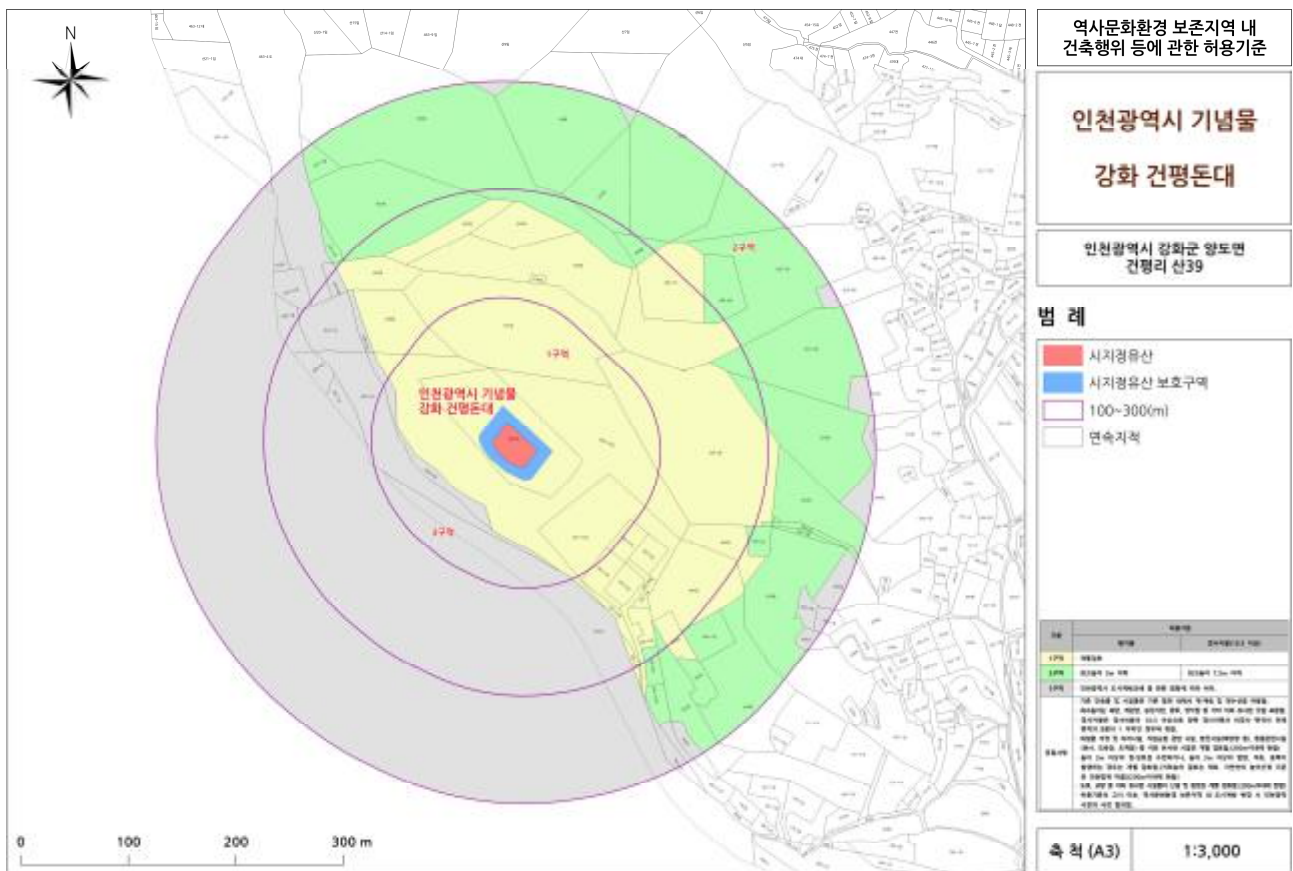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◦ 개별검토	
3구역	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	
공동 사항	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 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 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	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10) 기념물 강화 건평돈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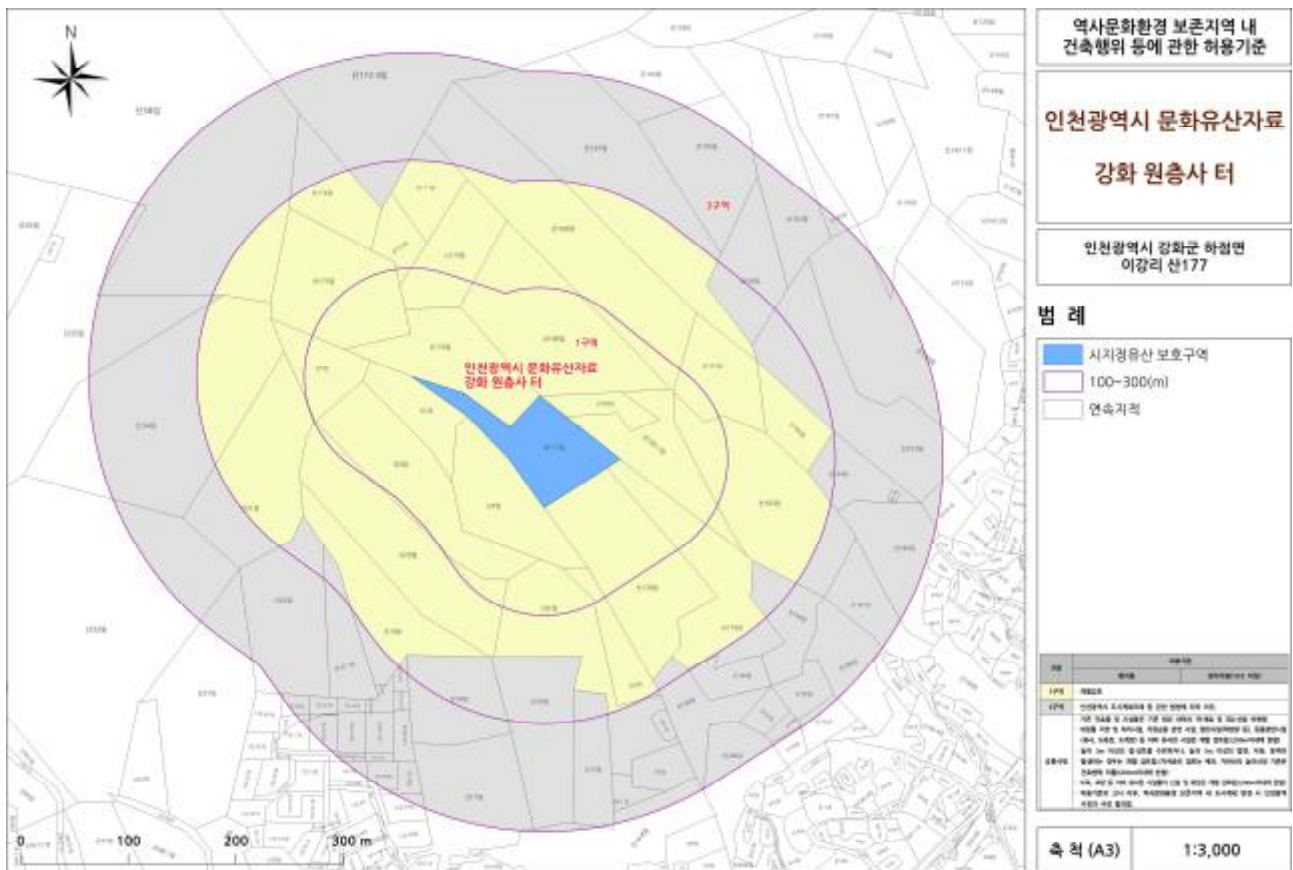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◦ 개별검토	
2구역	◦ 최고높이 5m 이하	◦ 최고높이 7.5m 이하
3구역	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	
공동 사항	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 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 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	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11) 문화유산자료 강화 원층사 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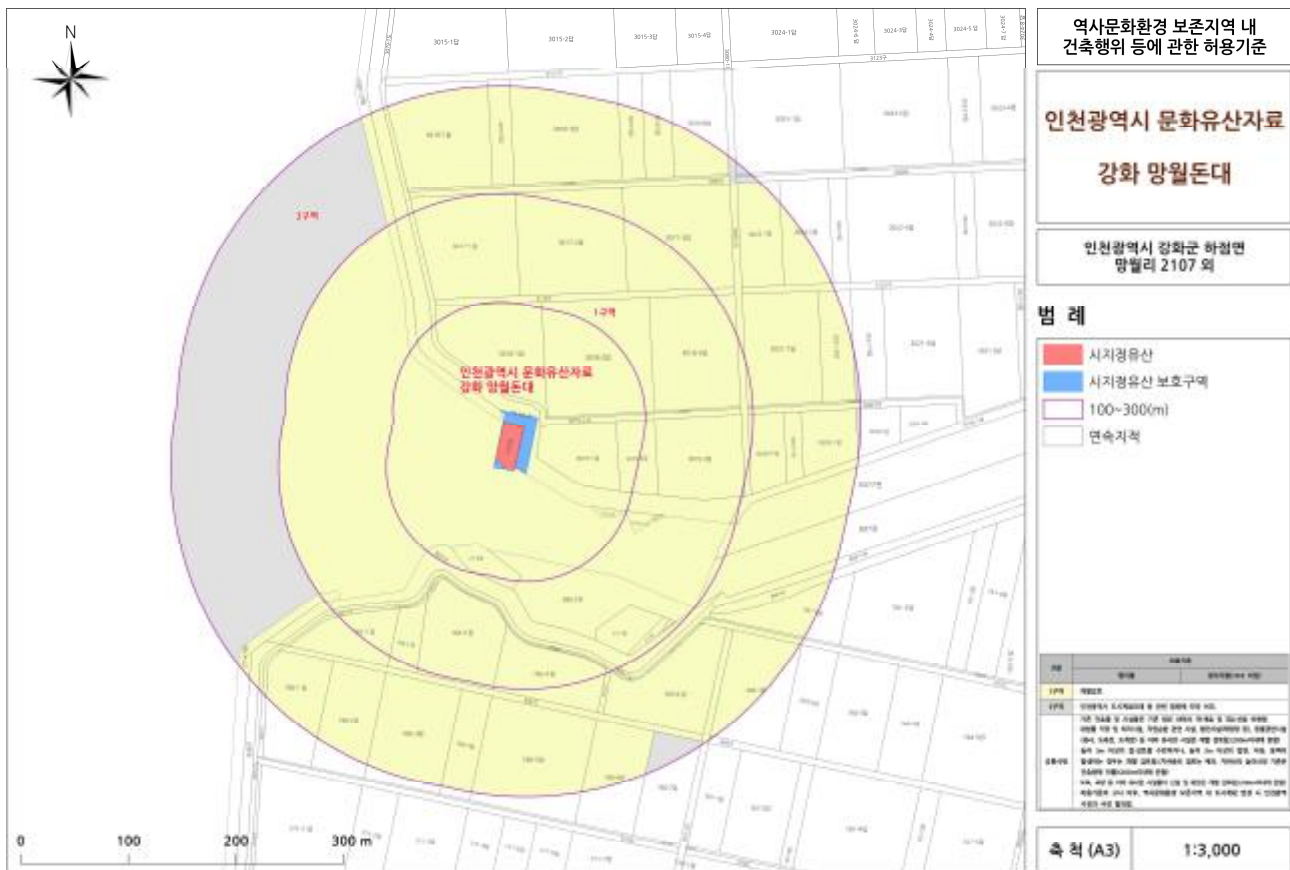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◦ 개별검토	
3구역	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	
공동 사항	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 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 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	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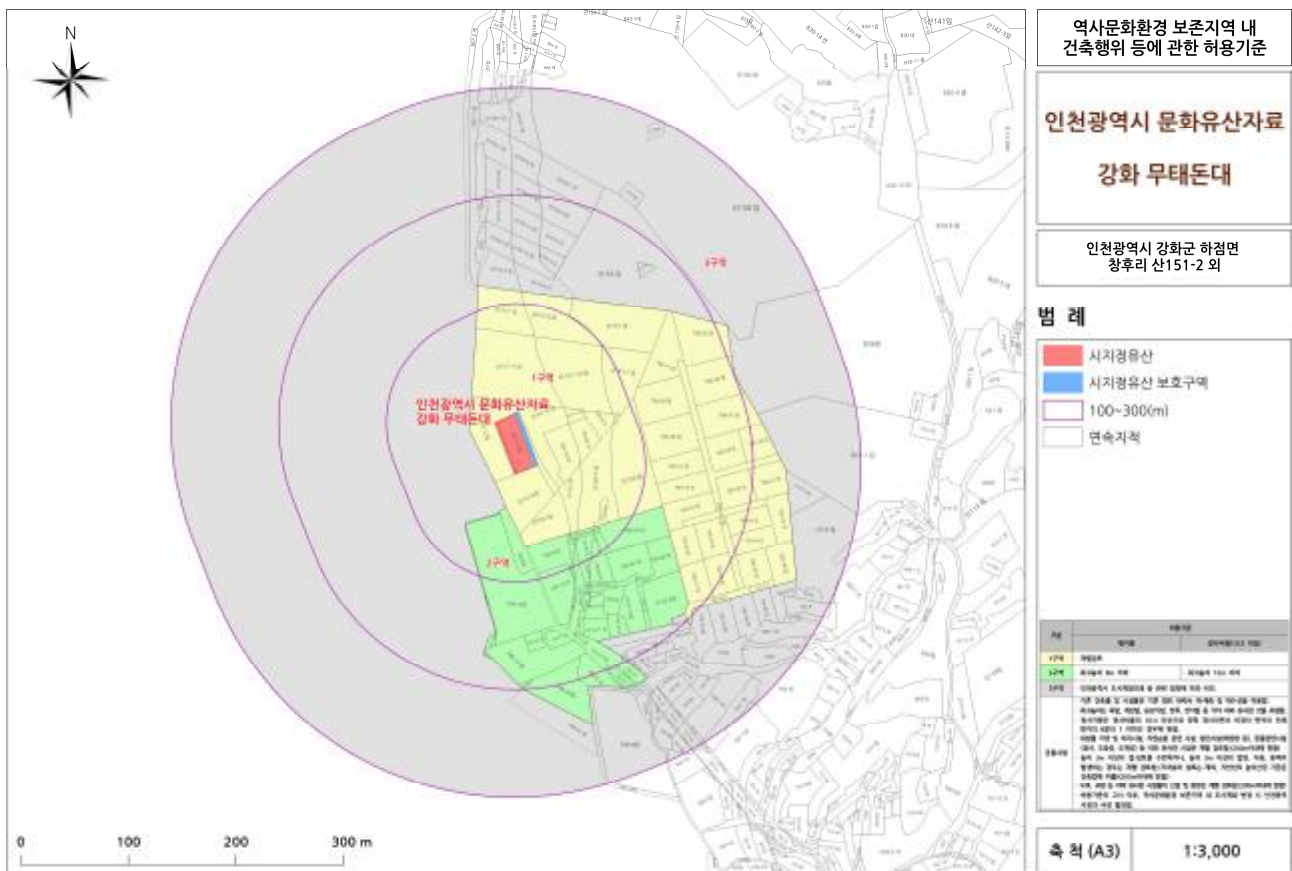
12) 문화유산자료 강화 망월돈대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◦ 개별검토	
3구역	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	
공통사항	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 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 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	



13) 문화유산자료 강화 무태돈대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◦ 개별검토	
2구역	◦ 최고높이 8m 이하	◦ 최고높이 12m 이하
3구역	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	
공동 사항	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 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 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 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	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사용등의 사용을 금합니다.